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백승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4.

발 의 자 : 백승아·김문수·강경숙
정을호·김영호·최기상
손명수·최혁진·문정복
김준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전에서 정신적 질환을 가진 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. 현재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.

한편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주로 개인의 정신질환과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, 경찰 수사결과는 우울증 등 질환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.

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당 사안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내에서의 위험한 행위를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분리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, 교육감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

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를 하는 등 긴급조치와 후속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의11 신설).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제1절에 제3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11(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)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분리하는 등 조치(이하 “긴급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학교의 장은 긴급조치를 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교직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 등 후속조치(이하 “후속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0조의11(교직원에 대한 긴급 조치 및 후속조치)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분리하는 등 조치(이하 “긴급 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② 학교의 장은 긴급조치를 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교직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

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 등 후속조치(이하 “후속조치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긴급조치 및 후속조치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